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6. 3 선고 2020나5544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

담당변호사 홍정표, 성창재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

담당변호사 이순배, 오승환

변 론 종 결 2021. 3. 4.

판 결 선 고 2021. 6. 3.

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3. 18. 선고 2018가단263940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B과 피고 사이에 2015. 8. 6. 체결된 80,000,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

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 주식회사(이하 ‘C’이라 한다)와 사이에 2013. 3. 18.부터 2015. 3. 30.까지 총 보증금액을 4억 5,9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3건의 보증서를 발행하였고, B은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C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C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, D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는데 2016. 1. 15. 위 각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6. 7. 22. 중소기업은행에게 291,802,031원, 2016. 7. 26. D은행에게 171,087,99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.

다. 이후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459,430,0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(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5079)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7. 5. 11. 확정되었다.

라. 피고는 B의 아들로서 2015. 5. 6. E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건물 제4층 G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를 1억 5,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7,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였고, 나머지 8,000만 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하였다.

마. 한편, B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, 서울회생법원은 2020. 7. 31. B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(같은 법원 2018라465), 위 결정은 2020. 8. 13.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9,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8,000만 원은 B으로부터 증여받아 형성한 것이므로,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,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바(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다25978 판결 참조),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B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, 파산채권인 위 구상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규정된 면책제외대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가 이미 면책된 파산채권인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정민, 판사 김정현, 판사 강창호